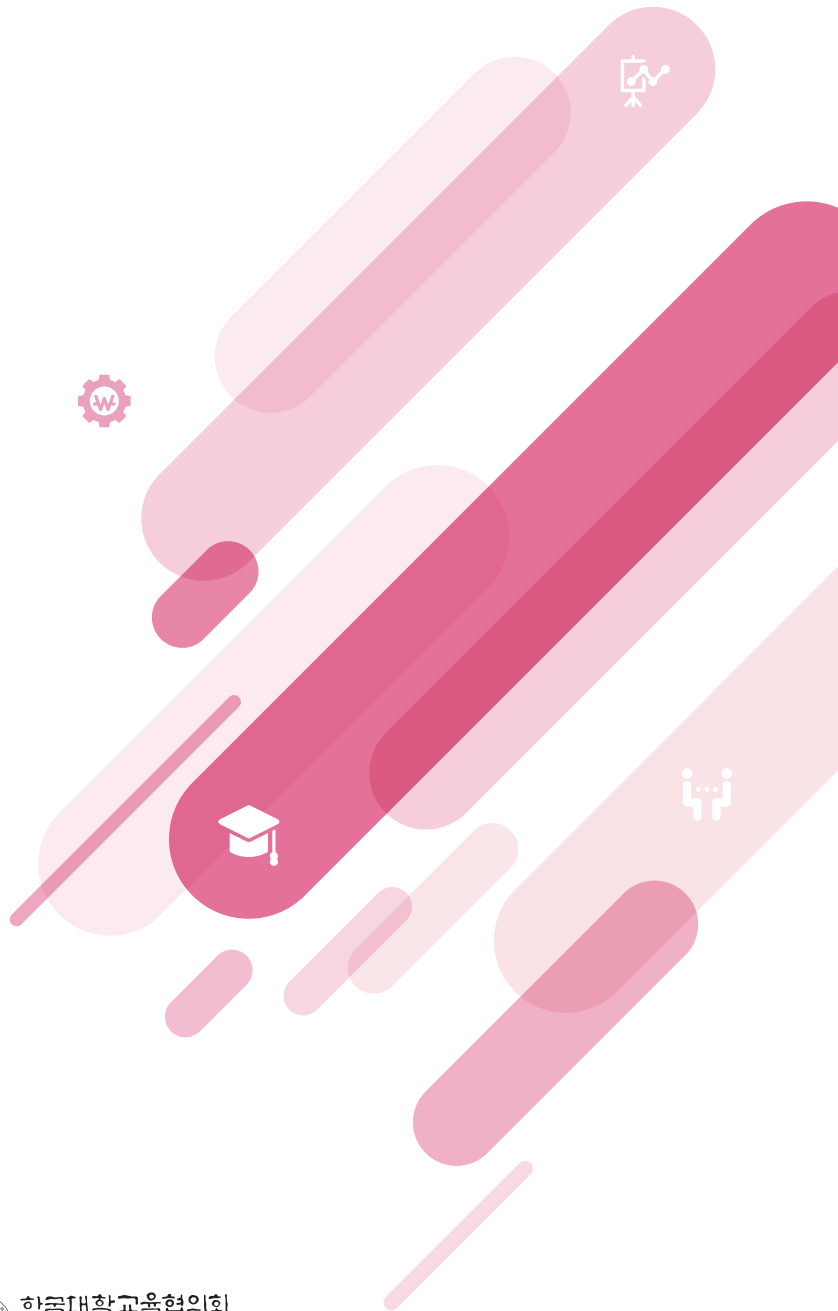


RM 2026-3-1152

2026년

#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설명회 자료집

2026. 3.



|주최|



|주관|



한국대학교육협의회  
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
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



# CONTENTS

---

2026년

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 
설명회 자료집

## 1.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

▣ 2026년 사업 세부 추진계획 .....	3
[붙임 1] 신청서 및 관련 서식 .....	12
(서식 1) 사업신청서 .....	13
(서식 2) 사업계획서 .....	16

## 2. 주요사항 FAQ 안내

▣ 주요사항 FAQ .....	21
------------------	----



# 「2026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」

## 참여대학 모집 공고

권역별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「2026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25일

교육부장관 최 교 진  
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양 오 봉

### 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명: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

나. 사업목적

-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, 맞춤형 진로·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 활성화
- 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·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교육활동 및 권역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지원
-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·확산 지원

다. 사업기간: 2026. 1. ~ 12.(12개월)

라. 사업예산: 총 840백만원

※ 학교별 지원 규모는 대학의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마. 사업내용

- 권역별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**‘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’** (진로·취업 지원, 통합 지원,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3개 유형) **지정·운영**
  - **(진로·취업 지원 유형)** 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
  - **(통합 지원 유형)** 진로·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권역별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역량 강화 등
  - **(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)**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·확산 지원

## 2. 사업 신청 일정 및 내용

구분	신청 일정 및 내용
접수기간	2026. 3. 19.(목) ~ 4. 2.(목) 15일간
제출서류	사업신청서, 요약서, 동의서,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[(붙임) 서식 참조]
제출방법	전자문서(수신처: 한국대학교육협의회)로 공문 제출

※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## 3. 참여대학 선정 계획

### 가. 공통사항

- **(신청유형)** 각 유형별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, 중복 지원 시 우선 순위 지정 필요
- **(선정조건)**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대학, 기관평가 인증대학, 전담인력 인건비 일부 대학(대응투자) 부담
  - ※ 예산 총액의 50% 내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

- (선정평가)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 시 대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  - ※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은 사업 세부 추진계획 참조
  - ※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소재 및 권역별 장애학생 수('25.8. 대학정보공시 기준)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담당 권역 조정 가능

## 나. 유형별 선정 계획

- 진로·취업 지원 유형
  - (선정규모) 8 ~ 10교
  - (신청대상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(기관평가 인증 대학)
  - (지원예산) 1교당 50백만원 내외
- 통합 지원 유형
  - (선정규모) 2 ~ 3교
  - (신청대상) '25년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대학으로 선정\*된 대학 중 희망 대학(기관평가 인증 대학)
    - \* 가톨릭관동대, 강남대, 경민대, 대구대, 부산대, 인천대, 전북대, 제주대, 한경국립대
  - (지원예산) 1교당 100백만원 내외
-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
  - (선정규모) 2교
  - (신청대상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(기관평가 인증 대학)
  - (지원예산) 1교당 100백만원 내외

## 4. 행정사항

### 가. e나라도움 교육

- 일시/장소: 2026년 4월 중/추후 안내 예정
- 참석대상: 사업 선정 대학의 담당자(참석 전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)
  - ※ 사업 선정 대학 대상 신청접수 및 일정 별도 안내

## 나. 문의 안내

-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지원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 
(전화 02-6915-7602, 7604, 7605 / 이메일 support1@kcue.or.kr)
-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교육부([www.moe.go.kr](http://www.moe.go.kr))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
([www.kcue.or.kr](http://www.kcue.or.kr)) 누리집 참조

〈붙임〉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식 1부

# 1

##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



2026년

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설명회 자료집



# 2026년도 사업 세부 추진계획

## 2026년도 사업 주요 변경사항

구분	2025년도		2026년도	
사업기간	■ 2025. 1. 1. ~ 12. 31.		■ 2026. 1. 1. ~ 12. 31.	
세부유형 및 지원 규모	■ 진로·취업 지원(신규)	교당 50백만원 내외	■ 진로·취업 지원(신규)	교당 50백만원 내외
	■ 통합 지원	교당 100백만원 내외	■ 통합 지원	교당 100백만원 내외
	■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(신규)	교당 100백만원	■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(신규)	교당 100백만원 내외
	총	700백만원	총	840백만원
유형별 선정 계획	■ 진로·취업 지원 유형 ○ 선정: 신규 선정 7~8교  ○ 평가영역: 대학현황, 사업 운영 여건, 프로그램 운영 계획, 예산 계획		■ 진로·취업 지원 유형 ○ 선정: 신규 선정 8~10교  ○ 평가영역: 대학현황, 사업 운영 여건, 프로그램 운영 계획, 예산 계획	
	■ 통합 지원 유형 ○ 선정: '24년 선정되어 장애대학생 지원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*(10교) 중 2~3교 선정  <small>* 가톨릭관동대, 강남대, 경민대, 나사렛대, 대구대, 부산대, 인천대, 전북대, 제주대, 한경국립대</small>		■ 통합 지원 유형 ○ 선정: '25년 선정되어 장애대학생 지원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*(9교) 중 2~3교 선정  <small>* 가톨릭관동대, 강남대, 경민대, 대구대, 부산대, 인천대, 전북대, 제주대, 한경국립대</small>	
	○ 평가영역: 기존 운영 성과(정량·정성), 사업 운영 여건, 프로그램 운영 계획, 예산 계획		○ 평가영역: 기존 운영 성과(정량·정성), 사업 운영 여건, 프로그램 운영 계획, 예산 계획	
	■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(신규) ○ 선정: 신규 선정 1교 ○ 평가영역: 대학현황, 사업 운영 여건, 프로그램 운영 계획, 예산 계획		■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 ○ 선정: 신규 선정 2교 ○ 평가영역: 대학현황, 사업 운영 여건, 프로그램 운영 계획, 예산 계획	
기타	■ 선정 조건: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,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일정 부분 대학 부담(대응투자) ※ 총 사업비의 50% 범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■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시 대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※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소재 및 권역별 장애학생 수('24.8. 대학정보 공시 기준)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담당 권역 조정 가능		■ 선정 조건: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,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일정 부분 대학 부담(대응투자) ※ 총 사업비의 50% 범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■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시 대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※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소재 및 권역별 장애학생 수('25.8. 대학정보 공시 기준)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담당 권역 조정 가능	

# I 사업 개요

## 1 추진근거
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5조 제1항 제10호
-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4조
- 「진로교육법」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
## 2 사업기간

- 2026. 1. 1. ~ 2026. 12. 31.(12개월)

## 3 주요내용

- 권역별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‘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’(진로·취업 지원, 통합 지원,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3개 유형) 지정·운영

## 4 지원대상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대학 중 (기관평가 인증 대학) 14교 내외  
※ 단, 통합형은 9개교('25년 선정대학) 중 희망대학

## 5 지원 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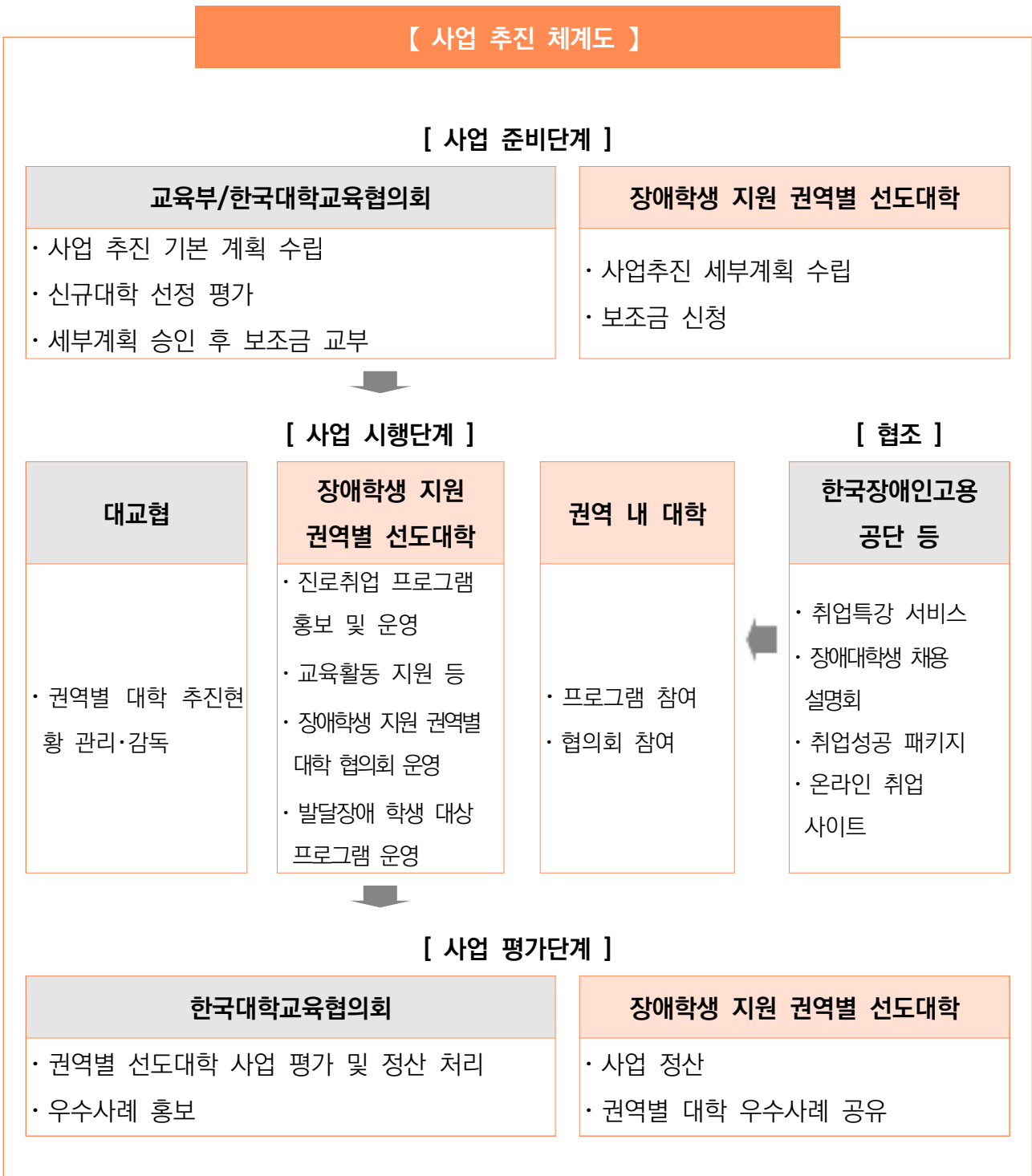
- 총 840백만원

## 6 지원내용

- (진로·취업 지원 유형) 신규 선정 8~10교, 교당 50백만원 내외 지원
- (통합 지원 유형) '25년에 선정되어 장애대학생 지원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\* 중 2~3교 선정, 교당 100백만원 내외 지원  
\* 가톨릭관동대, 강남대, 경민대, 대구대, 부산대, 인천대, 전북대, 제주대, 한경국립대
- (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) 신규 선정 2교, 교당 100백만원 내외 지원

1.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

1 사업 추진체계



- (교육부)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·운영 총괄
- (한국대학교육협의회, 이하 대교협)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·보조금 교부 등 운영 수행
- (운영위원회) 사업 주요사항 심의, 사업 선정 평가, 의견수렴 등
- (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)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
  - 권역별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·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
  - 권역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참여 대학, 학생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·확산
  - 타 대학을 위한 진로·취업 지원, 보조기기 지원, 교육자료 공동 개발, 교육지원인력 풀 관리 등
  -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
  -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

## 2.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·운영

- (기관 협업) 고용노동부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\* 등과 연계·협력을 통해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밀착 지원

\* 장애인고용기금, 장애학생취업지원사업, 근로지원인 지원사업,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등

※ 진로·취업 박람회와 연계, 취업자 진로·취업 멘토링, 모의 면접, 장애 유형별 취업 정보 제공 등

## 2.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

### 1. 목표 및 필요성

-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, 맞춤형 진로·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 활성화
- 장애대학생 대상 권역별 진로·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교육활동 및 권역별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 역량 강화 지원
-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·확산 지원

### 2. 주요사항

#### □ 공통 사항

- (대학 간 연계·협력 내실화)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통합 프로그램 개발·운영을 통한 진로·취업교육 규모화·효율화 추진 및 성과 확산

※ 권역별로 유사 전공, 희망 진로, 동일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취업 캠프, 현장실습, 채용박람회 등 개최, 권역별 우수사례 전파 등

- **(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)**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지역 산업체, 지자체 등과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 취업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
- **(수혜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)** 관련 협의체\*를 통한 홍보 강화로 권역 내 대학 참여 활성화 및 장애대학생 진로·취업 지원 기회 확대  
\* 전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협의회 등

### □ 진로·취업 지원 유형

- **(다양한 프로그램 운영)** 취업 캠프, 채용 박람회, 멘토-멘티 프로그램, 온라인 특강 등 학생 수요와 만족도 고려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
- **(맞춤형 진로설계 지원)** 장애학생 개인의 적성·소질에 따른 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여 진로·취업지원 효과성 제고
- **(취업 역량 강화 지원)** 현장 직무역량 및 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해 현실 적합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취업 역량 향상 지원
- **(장애학생 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)** 장애학생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멘토 역할 수행 및 권역별 협의회 운영

### □ 통합 지원 유형

- **(통합 지원 대학의 역할 정립)** ‘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’으로서 권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장애학생 대상 진로·취업 지원부터 교육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

#### 【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의 역할(예) 】

구분		진로·취업 지원 유형	통합 지원 유형
1	장애대학생 진로·취업 지원	○ 권역 내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·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	○ 권역 및 전국 단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·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○ 전국 단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·취업 박람회 등 운영
2	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		○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구비 및 타 대학 필요 시 보조기기 지원 ○ 공통 과목 등 교육자료 공동 개발·배포
3	권역 내 대학 멘토 지원	○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운영 ○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또는 대학 대상 ‘장애학생 지원’ 관련 멘토 역할	○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지원 ○ 전국 단위 교육지원인력 풀 관리
4	협력 강화	○ 통합형 대학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협조 및 지원	○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○ 장애학생 지원 관련 매뉴얼 제작·배포 등

### □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

- (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)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(발달장애 학생 지원 확대)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·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공유 및 확산 추진

## 3. 참여대학 선정 및 운영 계획

### 1 공통사항

- (추진방향) 장애학생 진로·취업 지원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권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역량이 우수한 대학 선정
- (선정방안) 진로·취업 지원 유형, 통합 지원 유형,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14교 내외를 선정함. 단, 통합 지원 유형은 기존 '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대학' 9교 중 희망하는 대학 대상으로 선정

#### 〈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선정 절차 〉



### 2 유형별 선정 계획

#### □ 진로·취업 지원 유형 선정 계획

- (선정 규모) 8~10교
- (선정 대상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(기관평가 인증 대학)
- (선정 조건)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,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일정 부분 대학 부담(대응투자)  
※ 예산 총액의 50% 범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
- (사업 기간) 2026. 1. 1. ~ 12. 31.(12개월)
- (선정 방법)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시 대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
※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소재 및 권역별 장애학생 수('25.8. 대학정보공시 기준)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담당 권역 조정 가능
- (평가 지표) 대학 현황, 사업운영 여건(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 포함), 프로그램 운영 계획, 예산 계획 등

구분	영역	세부 지표	평가 비중
정량	대학현황	• 장애대학생 수(10)	10
정성	사업운영 여건	• 학교 비전 및 센터와의 연계 전략(5) • 센터 구성 및 업무 현황(5) • 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(10) • 센터 인프라(시스템 포함)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(10)	30
	프로그램 운영 계획	• 진로·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우수성(15) • 권역 내 대학 지원 전략의 우수성(15) • 지역사회 연계 방안의 우수성(10) • 사업 성과 확산 및 관리의 우수성(10)	50
	예산 계획	• 예산 계획의 적절성(10)	10

100

## □ 통합 지원 유형 선정 계획

### ● (선정 규모) 2~3교

※ 기존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대학 중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

※ 선정교의 담당 권역은 장애학생 수 및 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 예정

### ● (선정 대상) 기존 사업대학 9교(25년 선정 대학) 중 희망 대학(기관평가 인증 대학)

### ● (선정 조건)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,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일정 부분 대학 부담(대응투자)

※ 예산 총액의 50% 범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

### ● (사업 기간) 2026. 1. 1. ~ 12. 31.(12개월)

### ● (선정 방법) 희망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시 대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정

### ● (평가 지표) 기존 운영 성과, 사업운영 여건(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 포함), 프로그램 운영 계획, 예산 계획 등

구분	영역	세부 지표	평가 비중
정량	기존 운영 성과	• 프로그램 운영 건수(2.5) • 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비율(2.5) • 프로그램 참여 대학 및 비율(2.5) • 장애학생 고용네트워크 연계 건수(2.5)	10
정성	기존 운영 성과	•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적절성(5) • 장애학생 고용네트워크 연계의 우수성(5) • 사업 홍보 방법의 다양성(5)	15
	사업운영 여건	• 장애학생 지원 운영 현황 및 역량(5) • 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(10) • 센터 인프라(시스템 포함)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(5)	20
	프로그램 운영 계획	•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(15) • 프로그램 추진 체계(조직 구성, 참여 인력의 전문성 등)의 적절성(15) • 사업 성과 확산 및 관리의 우수성(15)	45
	예산 계획	• 예산 계획의 적절성(10)	10

100

## □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 선정 계획

- (선정 규모) 2교
- (선정 대상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의 학교(기관평가 인증 대학)
- (선정 조건)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,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일정 부분 대학 부담(대응투자)  
※ 예산 총액의 50% 범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
- (사업 기간) 2026. 1. 1. ~ 12. 31.(12개월)
- (선정 방법)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시 대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(평가 지표) 대학 현황, 사업운영 여건, 발달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, 예산 계획 등

구분	영역	세부 지표	평가 비중	
정량	대학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애대학생 수(5)</li> <li>• 발달장애학생 수(5)</li> </ul>	10	100
정성	사업운영 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교 비전 및 센터와의 연계 전략(5)</li> <li>• 센터 구성 및 업무 현황(5)</li> <li>• 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(10)</li> <li>• 센터 인프라(시스템 포함)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(10)</li> </ul>	30	
	프로그램 운영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발달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(20)</li> <li>• 발달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체계(조직 구성, 참여 인력의 전문성 등)의 적절성(20)</li> <li>• 사업 성과 확산 및 관리의 우수성(10)</li> </ul>	50	
	예산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산 계획의 적절성(10)</li> </ul>	10	

### 3 수혜 제한

- (부정·비리대학 수혜 제한) 정부 재정 지원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 유도를 위해 대학의 부정·비리 사안에 대해 수혜 제한

## 4. 예산 운영 관련 사항

- (사업비 집행 기준) 장애학생 지원 진로·취업 프로그램 운영비,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·집행  
- 단,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전담인력 인건비\*는 예산 총액의 50% 내에서 사용  
\* 인건비에 대한 대학의 대응투자 필수
- (국고보조금 관련 유의 사항) 보조사업자(대학)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 
※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준수

- 보조사업자(대학)은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점검에 적극 협조 및 지원
  -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·반납할 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
  - (집행 책무성 확보) '장애학생 지원 권역별대학' 운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불가,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
  - ①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, ② 횡령 등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, 사업비 삭감, 지원 중단, 사업비 환수 등 가능
- ※ 「재정지원사업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·관리 매뉴얼」 준수

## 5. 사업 추진 일정

- 사업 신청 일정 및 내용

사업 내용	일정	비고
■ 사업 기본계획 수립	'26. 1월	교육부
■ 사업 공고	2월	교육부
■ 사업 설명회 개최	3월	교육부, 대교협
■ 대학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	4월	대교협
■ 참여 대학 세부 시행계획 제출	4월	참여대학
■ 대학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운영	4월~12월	대교협, 참여대학
■ 성과보고회 운영 및 대학별 결과보고 제출	12월~'27. 1월	대교협, 참여대학

※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은 별도 안내

**[사업 신청 방법] 공문발송**

- 제출 일정: '26. 3. 19.(목) ~ 4. 2.(목) 까지
- 제출 내용: 제출 서류 참고(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)
- 제출 방법: 공문으로 제출 (수신처: 한국대학교육협의회)

**[제출서류]**

[서식 1]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사업신청서  
(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포함)

[서식 2]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사업계획서

**[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]****□ 일반 사항**

- 사업계획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, 본 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
- ※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
-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
-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(둘째자리에서 반올림)
-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
-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“해당 없음”으로 기술

**□ 사업계획서의 효력**

- 필요 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
- 제출된 모든 문서는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
-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이 상실되고, ‘교육부’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반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





## 「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」 신청 사업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「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」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, 제17조 및 제22조」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#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
사업책임자: 성명, 직급/직위, 소속부서, 전화, E-Mail	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운영 관리	<u>1년</u>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사업책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 예, 아니오 )  
사업책임자 본인      성명 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2026년    월    일

교육부장관,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귀하

[서식 2]

「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」 사업계획서

신청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진로·취업 지원 유형 (○순위)	<input type="checkbox"/> 통합 지원 유형 (○순위)	<input type="checkbox"/>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 (○순위)
	※ 신규 참여 대학은 '통합 지원 유형' 지원 불가 ※ 중복 지원하는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반드시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1개 유형만 선정함		
사업기간		참여인력	명
총사업비	총 원	국고보조금	총 원( %)
		대응투자 (교비)	총 원( %)
		※ 예산 총액의 50%내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(인건비에 대한 대학의 대응투자 필수)	
「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」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 2026년 월 일  사업책임자: (인)			
상기 사업이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.  2026년 월 일  기관장: (직인)			
<b>교육부장관,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귀하</b>			

## (총 10쪽 내외 작성)

### I. 대학 현황

※ 대학 현황(소재지, 학제 및 설립유형, 역사, 재학인원, 장애유형별 재학생 현황, 특성 등)

### II. 사업 운영 여건

※ ① 학교 비전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연계 전략, ② 장애학생지원센터 구성 및 업무 현황, ③ 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, ④ 장애학생지원센터 인프라(시스템 포함)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

### III. 프로그램 운영 계획(유형별로 선택하여 작성)

※ 유형1-진로취업 지원 유형: ①장애대학생 진로·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, ②장애학생 지원 관련 권역 내 대학 지원 계획, ③지역사회 연계방안, ④사업 성과 확산 및 관리 계획  
 ※ 유형2-통합 지원 유형: ①장애대학생 진로·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, ②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, ③장애학생 지원 관련 지역사회 연계 및 전국 대학 지원 계획, ④사업 성과 확산 및 관리 계획  
 ※ 유형3-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: ①발달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, ②발달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체계 구축 계획, ③사업 성과 확산 및 관리 계획

### IV. 예산 계획

※ 예산 운용 계획(학교 대응 투자 계획 포함) 등

보조비목	보조세목	세부 산출 내역	예산		비고
			국고	대응	
인건비	보수				
운영비	일반수용비				
	일반용역비				
여비	국내 여비				
계					

※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\*는 예산 총액의 50% 내에서 사용  
 \* 인건비에 대한 대학의 대응 투자 필수

### V. 추진 일정

사업 내용	월별 추진일정											
	1~2	3	4	5	6	7	8	9	10	11	12	
기획												
:												
:												
:												
정산마감												

(참고1) 보조 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(기획재정부 공고) (제2024-227호)

보조비목	보조세목	내역
인건비 (110)	보수 (01)	1.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- 봉급, 정근수당, 성과상여금, 정액수당, 초과근무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명예퇴직수당, 연가보상비 2.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. 성과급 4. 퇴직급 및 퇴직급여 총당금 5. 직급보조비
	기타인건비 (05)	1. 전문임기제, 사법연수원, 시보공무원이 될 자, 청원경찰, 청원산림보호직, 수련의(인턴, 레지던트), 공중보건기사, 공중방역수의사, 징병전담의, 공익법무관,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, 소방간부후보생, 견습직원,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. 강사료, 원고료, 통역료, 번역료, 자문료, 회의참석비, 단순인건비
운영비 (210)	일반수용비 (01)	1. 사무용품 구입비 - 필기용구,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
		2. 인쇄비 및 유인비 -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
		3.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- 현수막,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- 기관간판, 명패, 감사패, 상패 등의 제작비
		4. 소모성 물품 구입비 -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
		5. 간행물 등 구입비 - 신문·잡지·관보·도서·팸플릿 등 정기·비정기 간행물 구입비
		6. 비품 수선비 - 책상, 의자, 캐비닛, 파일박스, 집기, 전산기기,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*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
		7.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- 물품관리위탁수수료, 업무대행수수료,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, 전송금, 우편송금수수료 - 등기 및 소송료(인지대 및 법정수수료) 등 - 검정료, 감정료, 시험료, 회계검사수수료 - 물품의 보관운송료, 고속도로통행료, 주차 및 차고료,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, 상하차비, 선적·하역비
		8.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- 변호료·수임료 및 보수 - 속기·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- 현상 모집의 상금,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-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
		9. 공고료 및 광고료 - TV·신문·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
		10. 각종 회의비, 전문가 활용비
		11.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

보조비목	보조세목	내역
		12.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
	일반용역비 (14)	1.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채용,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
여비 (220)	국내여비 (01)	1.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.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. 월액여비 4. 교육여비

(참고2)

e나라도움 집행 시 제출 자료

◆ 비목 및 세목별 증빙자료

보조비목	보조세목	증빙자료	비고
인건비	보수	① 근로계약서(최초 1회) ② 지출문서 ③ 이체확인증	◦ 전담인력 인건비는 예산 총액의 50%내에서 사용 가능 ◦ 인건비에 대한 대학의 대응 투자 필수
운영비	일반수용비	① 지출문서 ② 기본계획,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③ 강사료 관련 교내 지침(필요 시)	◦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시 '사업자등록증', '통장 사본' 첨부 필수 ◦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거래처계좌가 아닌 보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확인증(거래명세서) 첨부 필수
	일반용역비	① 용역 계약서 및 견적서(최초 1회) ② 기본계획,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③ 지출문서 ④ 전자세금계산서	
여비	국내여비	① 지출문서 ② 교내 여비 규정 ③ 여비 관련 결과보고서	

◆ 지출 문서

- 국고 또는 교비가 표기된 교내 지출 결의, 영수증 등을 포함한 지출 문서 제출
- 영수증 누락, 집행액과 영수증 금액의 불일치, 집행일과 영수증 발행일이 불일치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지출 문서 제출 시 각별히 유의
- 회의비(식사 및 다과) 영수증은 세부 내역 첨부가 필수이며, 대학 내부 인원만으로는 회의비 집행 불가
- 유가증권(기프트콘, 상품권 등) 및 기념품 지급 시 지급 대상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으로 한정됨 금액은 1인당 2만원 이하로 제한하며 반드시 수령증(자필 서명 필수)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
-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포상은 국고로 불가하며 기관방문 경비 및 선물은 회의비(식사 및 다과)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함
- 강사료 집행등록 시 강사료 관련 대학 내부 지침 등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

◆ 프로그램 결과보고서

- 프로그램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내용, 참가자 명단(자필 서명 필수), 참여 대학 및 기관명, 프로그램 사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. 또한, 프로그램과 참가자의 참여 방식을 대면 또는 비대면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함

◆ 전자세금계산서

-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시 사업자등록증, 통장 사본 첨부 필수

※ e나라도움 집행 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

※ 증빙 첨부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(주소,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)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서 첨부

# 2

## 주요사항 FAQ 안내



2026년  
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설명회 자료집



## 주요사항 FAQ

### 1 사업신청

#### Q1.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-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대상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로서 기관평가 인증 대학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,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.

#### Q2.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사업 공고에 첨부된 제출서류(사업신청서, 요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사업계획서)를 작성하여 전자공문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고,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 일정은 2026. 3. 19.(목) ~ 4. 2.(목) 24시까지 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문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Q3.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사업의 유형은 진로·취업 지원 유형, 통합 지원 유형,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. 이 중 진로·취업 지원 유형과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대학은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, 통합 지원 유형은 2025년에 선정되어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에 참여했던 9교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 중복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은 다릅니다.
- 여러 유형에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양식에서 신청하는 유형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, 신청 유형별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, 중복 신청해도 사업은 1개 유형만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지원 유형별로 우선 순위를 지정해야 하며, 신중하게 판단하여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Q4.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은 예산 총액의 50% 내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인건비 일부를 대학이 대응투자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?

-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사업비 총액의 50% 내에서 사업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고, 인건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대응투자자로 해야 합니다. 다만, 대응투자 비율은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필요한 인건비 금액을 교비로 투입하면 됩니다.
- 또한,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응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**Q5.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의 유형에서 진로·취업 지원 유형과 통합 지원 유형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?**

- 세부 추진계획에서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의 역할을 진로·취업 지원 유형과 통합 지원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【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의 역할(예) 】**

구분	진로·취업 지원 유형	통합 지원 유형
1	장애대학생 진로·취업 지원 ○ 권역 내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·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	○ 권역 및 전국 단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·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○ 전국 단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·취업 박람회 등 운영
2	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	○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구비 및 타 대학 필요 시 보조기기 지원 ○ 공동 과목 등 교육자료 공동 개발·배포
3	권역 내 대학 멘토 지원 ○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운영 ○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또는 대학 대상 '장애학생 지원' 관련 멘토 역할	○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지원 ○ 전국 단위 교육지원인력 풀 관리
4	협력 강화 ○ 통합형 대학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협조 및 지원	○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○ 장애학생 지원 관련 매뉴얼 제작·배포 등

- 진로·취업 지원 유형에 선정된 대학은 해당 권역에서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·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권역 내 다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합 지원 유형 대학을 지원해야 합니다. 통합 지원 유형 대학은 해당 권역을 넘어서 전국의 장애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진로·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박람회 등을 운영하고, 보조기기 지원, 교육자료 개발·배포, 교육지원인력 풀 관리,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, 장애학생 지원 관련 매뉴얼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.

**Q6.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?**

-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사업의 평가는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4월 중에 서면평가(필요시 대면 평가)를 실시하고,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
- 선정된 대학은 평가 결과와 결정된 사업비를 고려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, 이를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.

## 2 사업운영

### Q7. 대응투자(교비)를 e나라도움을 통해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이 있나요?

- 대응투자(교비)도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하여 집행등록 해야만 합니다. 실제 이체는 완료했지만 e나라도움을 통하지 않고 대응투자(교비)를 지출하였으므로, e나라도움시스템 상에서 **이체구분을 보조금계좌로 이체 선택 후 이체실행**을 하게 되면 실제 금액은 이체되지 않고 대응투자(교비) 사용 내역이 기록됩니다.
- e나라도움시스템 : 사용자 매뉴얼 → 보조사업자 → 상세업무명(자기부담금을 e나라도움을 통해 지출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)

### Q8. 사업신청 시 기재했던 내용에 예산 변동(비목간 조정 등)사항이 있을 경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, 대교협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안내 절차에 따라  
① 대교협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공용 메일(support1@kcue.or.kr)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보내주셔야 합니다. ② 대교협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검토 후 해당 대학에 사업계획 변경 공문 발송을 요청합니다. ③ 해당 대학은 대교협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공문으로 발송합니다.

[대학] 사업 계획 변경 사유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사전 협의 요청 → [대교협] 검토 후 변경 가능 여부 회신 → [대학] 공문 및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→ [대교협]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 발송 → [대학]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

- e나라도움시스템 : 사업수행관리 → 신청관리 → 사업변경관리 → 사업변경신청(대학 자체 내부결재 문서 및 증빙자료는 e나라도움시스템 입력 시 첨부)
- ※ 사전 협의 없이 공문을 제출하거나 e나라도움 신청을 진행할 경우, 수정·보완 사례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전 협의 후 변경할 필요가 있음

### Q9. 국고보조금 교부 전,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에 의해 대응투자(교비) 금액으로 우선 집행하고,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하오니 확인하여 집행 부탁드립니다.
- e나라도움시스템 : 사용자 매뉴얼 → 보조사업자 → 집행관리 → 보조금 교부받기 전 기관자체 비용으로 집행 시 처리방법

### Q10. 사업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정산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, 국고보조금 '잔액, 이자'를 반납하게 됩니다.
  - 잔액 : 집행 이후 남은 보조금 잔액(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, 필수 반납 대상)
  - 이자 : **예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**(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, 필수 반납 대상)
  - 수익금: 보조금계좌(대학 통장)에서 발생한 이자(대학 통장을 통해 조회 가능, 필수 반납 대상 X)
- 회계연도 종료(2026.12.31.(목)) 후 2개월 이내 진행,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참여 대학으로 공문(일정 포함) 안내 예정
- e나라도움시스템 : 사용자 매뉴얼 → 보조사업자 → 정산관리(예치형)

### Q11. 작년엔 정산하지 못한 이자가 있는 경우,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

-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정산 이후라도 반납을 해야 하고, e나라도움 정산추가반납을 통해 반납하면 됩니다. 단, 정산보고서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 취소 후 재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 이자 발생 시 사전에 정산책임이 있는 중앙부처 및 상위보조사업자의 업무 협의 후 반납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, 사후 정산 반납의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한 반납 절차 완료 후 교육부(평생학습정책과)로 최종 반납 완료 공문을 발송하기 바랍니다.
- e나라도움시스템 : 사용자 매뉴얼 → 보조사업자 → 정산관리(예치형)

### Q12.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첨부 증빙자료 목록 어떻게 되나요?

구분			증빙자료	비고
1	인건비	보수	①근로계약서(최초1회) ②지출문서(국고, 교비 표기된 지출결의(기본 결재 포함) 등 ③이체확인증	• 전담인력 인건비는 예산 총액의 50%내에서 사용 가능 • 인건비에 대한 대학의 대응 투자필수
2	운영비	일반수용비	①지출문서(국고 지출결의(기본 결재 포함) 등 ②기본계획, 프로그램결과보고서 ③강사료 관련 교내 지침(강사 수당 지급시)	• 전자세금계서서 첨부 시 '사업자등록증', '통장 사본' 첨부 필수 •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거래처계좌가 아닌 보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확인증(거래명세서) 첨부 필수 • 카드사용 시 e나라도움카드만 사용 가능
		일반용역비	①지출문서(국고 지출결의(기본 결재 포함) 등 ②기본계획, 프로그램결과보고서 ③용역 계약서, 견적서, 거래명세서, 전자세금계산서(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)	
3	여비	국내여비	①지출문서(국고 지출결의(기본 결재 포함) 등) ②교내 여비 규정 ③여비 관련 결과보고서	

### Q13. 일반용역비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요?

- 일반용역비 지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[참조]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

- 장애대학(원)생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 신청내역 및 지원내역
-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(계약서,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)
- 기타 추가적인 증빙자료

- 전자세금계산서 집행
  - 업체가 청구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e나라도움시스템 상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록(조회완료)하신 후, 증빙구분 '전자세금계산서'로 집행(이체)하셔야 합니다.
  - 여러 업체에서 청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집행(이체)하시는 경우에는 업체별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후, 각각 집행(이체)하셔야 합니다.
  - 집행 계획 및 업체 물품 구입 예정된 금액을 업무 완료 이전에 보조금사업통장에 예산을 사전 이체하시는 경우, 여러 업체에서 청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구분 '기타'로 선택 후, 각 건 별로 집행(이체)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조달청 공고를 통해 조달수수료를 집행하시는 경우에도 각각 집행(이체)하시기 바랍니다.
- \*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경로(e나라도움 시스템) : 로그인→집행정산→집행관리→전자(세금)계산서 등록→전자(세금)계산서 조회 요청→(팝업)승인번호(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승인번호 입력)→추가→증빙조회요청 클릭→조회 구분(조회요청)→검색 클릭→조회 구분(조회완료) 전환

### Q14. e나라도움 지출 시 보조비목세목을 잘못 선택하여 지출 처리하였습니다. 반환 후 처리를 해야 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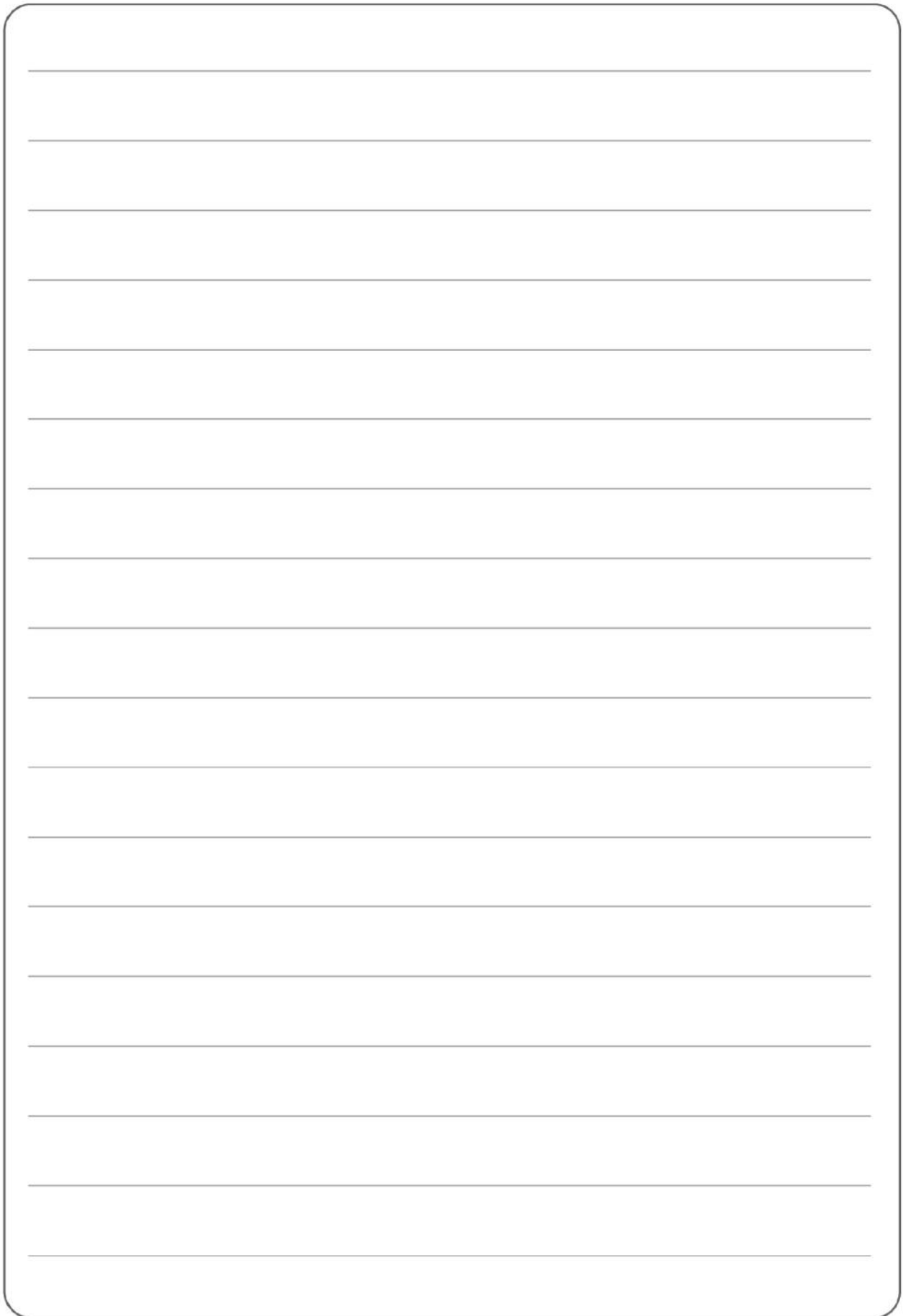
- 이미 이체 처리한 집행건의 경우라도 보조비목세목은 변경 가능합니다. 변경할 집행 건을 더블 클릭하여 상세조회 창을 띄우고 비목 및 재원 변경 후 집행정보 수정을 누르면 변경 처리됩니다.
- 단,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업 변경 절차를 선행하셔야 합니다.
- e나라도움시스템 : 사용자 매뉴얼 → 보조사업자 → 집행관리 → 집행취소 및 집행정보 수정방법 (비예치형 포함)

### Q15. e나라도움 정보공시 등록 및 공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?

- 정보공시 등록: e나라도움시스템 → 홈페이지상단 Quick menu → 정보공시 혹은 정보공개 →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→ 정보공시 접수
- 정보공시 기한: 국고보조금 1천만원 이상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일(사업 종료일)로부터 4개월 이내, e나라도움을 통해 정보공시를 완료하면 됩니다.  
예) 사업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익년 4월 30일까지 정보공시 완료
- \* 보조사업자가 '보조사업자 정보공시'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시정명령, 보조금삭감, 명단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Lined memo page with 24 horizontal lines.

 MEMO



A large rounded rectangular area containing 20 horizontal lines for writing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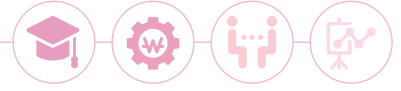


Lined writing area for notes.



2026년

#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설명회 자료집



| 주최 |



| 주관 |



한국대학교육협의회  
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
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

